순천시 공고 제2022 - 2621호

「**순천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 위임사항 정비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리목적 상습적 위반은 가중 부과

2.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3항 제2호가목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공동주택 인동간격에 관한 사항) 정비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위임사항에 따른 가중부과 비율 100분의 50

3. 입법예고 기간 : 2022. 12. 15일 ~ 2023. 1. 6일(22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6일까지 순천시장(건축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6380, FAX : 061-749-466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하고”를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로 한다.

제3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건축물,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 건축심의를 득한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추어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④ (생 략)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한다.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 ---------- ----------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이행 강제금의 부과) ①·② (생 략)	제35조(이행 강제금의 부과)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은 100분의 50으로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